

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정태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60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8월 11일

발 의 자 : 김정태, 고병국, 권영희,
김경우, 김태호, 문병훈,
여 명, 이세열, 임종국,
장상기, 채유미, 최정순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저성장 경제와 고용절벽에 따른 일자리 환경 악화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투자·출자·출연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정원 30명 이상인 투자·출자·출연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100분의 4 이상으로 확대함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청년고용촉진 특별법
- 나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 별첨
- 다. 기타 : 신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100분의 3” 을 “100분의 4” 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투자·출자·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) ① 정원이 30명 이상인 투자·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 정원의 <u>100분의 3</u> 이상씩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조조정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4조(투자·출자·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) ① ----- ----- ----- <u>100분의 4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